건강한 축산, 안전한 축산물 - 축산농가 관리 정보

이어진 축산 관련 이슈들에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져 있는 요즘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장의 위생 안전 의식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관리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일 것이다. 특히, 축산의 제일선인 축산 농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축산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는 크게 축산물 위해요소 관리와 위생·안전 관리의 두 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축산물 위해요소는 동물용 의약(외)품, 중금속, 병원성 세균, 가축 질병, 이물 등이다. 위생·안전 관리는 사료 및 음수 관리, 동물약품 관리, 질병 관리, 사육시설 관리, 기타 사양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중에서도 최근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동물용 의약품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사용은 물론 후처리까지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해를 위해 설명을 더하자면, 축산농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 외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축산물 위해요소

위생·안전 관리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건강한 가축 사육과 성장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오·남용 우려 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 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용 의약 외품은 동물에 직접 작용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제로 소독제, 살균제, 해충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유인 살충제 등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질병 예방이나 농장, 동물 위생, 미용 등에 사용되는 품목을 말한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 외품(살충제 등)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에 따라 투약하며 과잉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4. 휴약 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5. 사용 방법(투약 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7. 주사 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합니다.
8. 휴약 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9.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10.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은 약품 잔류 등의 경우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한 꼼꼼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가축, 계란 등 생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 받게 되며 6개월간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검사를 받게 된다. 게다가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모두 폐기되기에 벌금 외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

그밖에도 표와 같이 축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위반 내역에 따라 달리 처벌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축산, 안전한 축산물을 만드는 주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농가나 유통업소 등 모두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축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 법규와 위반 시 벌칙 기준 *

관련법	위반 내역	벌칙·과태료	비고
축산물위생 관리법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시	벌칙 : 형사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소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벌칙 : 형사 고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소 등
약사법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벌칙 : 형사 고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업소 등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 (1회 30만원 / 2회 45만원 / 3회 70만원)	농가
농약 관리법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1회 40만원 / 2회 60만원 / 3회 80만원)	농가
사료 관리법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업소 등